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환경부 (대기관리과)
연 월 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고, 부속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히트펌프에 대해 신규 시설은 '22.7.1부터, 기존 시설은 '24.12.31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도록 하되,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 시설에서 제외(안 별표 3 제2호나목32)라) 신설 등)

나. 부속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안 별표 3 제2호나목 비고 5 신설) 부속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21.12.31까지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3.12.31까지, 공동자원화시설 및 농축협공동퇴비장 및 민간 사업장은 각각 '24.12.31까지 및 '25.12.31까지로 단계적으로 적용

다. 도서지역 액체연료 사용 발전시설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적용시점을 조정(안 별표 8 제2호가목1) 비고 제10호 및 나목1) 비고 제7호)

백령도 설치된 시설 적용시점을 '21.1.1에서 '23.1.1로 조정하고, 연

평도 및 울릉도 설치된 시설 적용시점을 '21.7.1에서 '22.1.1로 조정
라. 방z시설설치면제사업장 중 자가측정이 불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자가측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별표 11 제2호비고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으로 하고, “기록·보존하여야”을 “기록·보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존하여야”을 “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본문 및 같은 호 같은 목 2)타) 중 “시·도지사”를 각각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의 단서 및 같은 호 같은 목 3)카) 중 “시·도지사”를 각각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32) 배출시설란 중 “냉·온수기”를 “냉·온수기·가스히트펌프”로 하고, 같은 목 32) 대상 배출시설란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스히트펌프(Gas Heat Pump: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구동하여 증기압축식 냉동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히트펌프식 냉·난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만, 별표 8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가스히트펌프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별표 3 제2호나목에 비고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 표의 13)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의 「비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비료 중 부속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중 퇴비 및 액비 자원화시설 : 2023년 12월 31일까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공동자원화시설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나목

이외의 시설(「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를 비료의 한 종류로 등록한 제조장을 포함한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6. 2022년 7월 1일 당시 가스히트펌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비고 제1호마목 중 “시·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 일산화탄소(ppm)란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스히트펌프(Gas Heat Pump: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구동하여 증기압축식 냉동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히트펌프식 냉·난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2022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400(0) 이하
나) 2022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0(0) 이하

별표 8 제2호가목1) 질소산화물(NO₂로서)(ppm)란 1)의 바)를 사)로 하고, 같은 1)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가스히트펌프	
(1) 2022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00(0) 이하
(2) 2022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0) 이하

별표 8 제2호가목1) 탄화수소(THC로서)(ppm)란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스히트펌프	
가) 2022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400(0) 이하
나) 2022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0(0) 이하

별표 8 제2호가목1) 비고 제5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6)가)(2)(가)②④ 및 ④ 해당 시설 중 (주) 현대케미칼	납사개질공정의 가열시설은 70(4)ppm을 적용하고, 에틸렌 크래킹공정 가열시설은 45(4)ppm을 적용한다.
---	--	---

별표 8 제2호가목1) 비고 제9호 중 “시·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비고 제10호 중 “2021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2021년 7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1) 비고 제6호 중 “시·도지사”를 각각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중 “2021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하며, “2021년 7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8 제3호라목2) 중 “시·도지사”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별표 11 제2호 비고 제2호 단서 중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를 “이유로 자가측정이 곤란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는 장치를 상시 가동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자가측정이 필

요하지 않다고”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나목32), 별표 8 제2호가목1) 일산화탄소(ppm)란 5), 질소산화물(NO₂로서)(ppm)란 바) 및 탄화수소(THC로서)(ppm)란 6)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1. ~ 5. (생략)

③ (생략)

보존해야----- .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 .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